

(주)스타트업의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계약서 패키지

To : 투자자님

SAMPLE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

안녕하십니까? 오픈트레이드 운영팀입니다.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게 큰 힘과 응원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트레이드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보통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패키지를 참조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타트업 정보

본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실시간 사업현황은 오픈트레이드 사이트(www.opentrade.co.kr)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타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자 조건

구 분	내 용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1주당 발행가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조달의 목적 내용

▣ 크라우드펀딩 프로세스

1. 오픈트레이드에서 투자의향 접수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2. 투자의향 접수 마감 (20XX년 XX월 XX일)
3. 오프라인 모임 (20XX년 XX월 XX일 오후 XX시)
4. 투자계약 체결 (첨부 #1 참조)
5. 증자금 납입 완료 (20XX년 XX월 XX일 오후 XX시까지, 첨부 #2 스타트업 통장 사본)
6. 증자금 등기 완료 (납입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7.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 (첨부 #3 참조, 증자 등기 완료 후 3일 이내)

▣ 투자계약 체결 방법

본 패키지에 첨부된(#1) 투자계약서 2부에 기명날인 하신 후 1부만 첨부된 봉투(#4)를 사용해서 오픈트레이드로 보내주시고 약정하신 증자금을 첨부된 법인통장으로 납입해 주시면,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패키지 구성

- #1. 투자계약서 2 부
- #2. 스타트업 통장 사본 1부
- #3. 주권미발행확인서 샘플 1부.
- #4. 계약서 발송용 우편봉투 1개. 끝.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XX년 XX월 XX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2. 회사: 주식회사 스타트업(이하 "회사")

주소 _____

대표이사 창업자

다 음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XXX주
- 2)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XXX원
- 3)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XXXX원
- 4)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XXXX원
- 5)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20XX년 XX월 XX일
- 6) 투자자에게 배정할 본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u>투자자</u>	XXX주	XXX,XXX원
합계	XXX주	XXX,XXX원

2.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만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
- 2)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 3)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

1.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 하였을 것
2. 회사가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를 준수하였을 것. 단,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또는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2.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진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완결 전 의무

회사는 본건 주식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제5조 거래완결 전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단, 거래완결 후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거래의 완결

1. 투자자는 20XX년 XX월 XX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예금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2.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다.
3. 거래완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사는 필요한 증자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타 본 계약서상의 본건 주식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
2.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의 내용 변경

1.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통지

1. 본 계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_____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2조 세금

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 기타

1. 회사는 회사의 영업 등 사업 진행현황을 최소 주 2회 이상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 타임라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지분 매각 등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이 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 또는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Tag-along)
3. 회사는 후속 투자유치시 본 계약상 투자자가 인수한 회사 주식을 후속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XX년 XX월 XX일

투자자 : 투자자 (서명: _____)

주소: _____

회 사 : 주식회사 스타트업

주소

대표이사 창업자 (인)

첨부 #1 - 투자계약서 2/2

투자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XX년 XX월 XX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2. 회사: 주식회사 스타트업(이하 "회사")

주소 _____

대표이사 창업자

다 음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5.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7)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XXX주

8)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XXX원

9) 본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XX,XXX원

10) 본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XXX,XXX원

11)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 : 20XX년 XX월 XX일

12) 투자자에게 배정할 본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투자자	XXX주	XX,XXX원
합계	XXX주	XX,XXX원

6.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7. 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은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만약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주주권증서

5)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6)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

6.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 하였을 것
7. 회사가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를 준수하였을 것. 단,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418조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9.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10.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또는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4. 회사는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5. 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6. 본 계약의 체결 및 진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완결 전 의무

회사는 본건 주식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제5조 거래완결 전 해제

3.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단, 거래완결 후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4.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거래의 완결

4. 투자자는 20XX년 XX월 XX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예금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5.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다.
6. 거래완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사는 필요한 증자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타 본 계약서상의 본건 주식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종료

3. 본 계약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
4.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의 내용 변경

3.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통지

3. 본 계약에 따른 회사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_____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3.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4.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12조 세금

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 기타

- 7. 회사는 회사의 영업 등 사업 진행현황을 최소 주 2회 이상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 타임라인에 공시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지분 매각 등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오픈트레이드 (www.opentrade.co.kr)에 공시하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은 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양도, 이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 또는 양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Tag-along)
- 9. 회사는 후속 투자유치시 본 계약상 투자자가 인수한 회사 주식을 후속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10.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11.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2.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 20XX년 XX월 XX일

투자자 : 투자자 (서명: _____)

- 주소: _____

회 사 : 주식회사 스타트업

주소 _____

대표이사 창업자 (인)

첨부 #2 - 스타트업 통장 사본

저희 **우리은행**은 커진 만큼 큰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인 지 세
100원
납대문세무서장
선납승인 2012년 177호



서명
우리은행

인감사용
신고번호:

계좌관리점: 삼성역지점	개설일자: 2012-12-20	전화: 02- 528-5900	
통장발행점: 삼성역지점	발행일자: 2012-12-20	02- 528-5900	

(이 통장은 표지를 참하여 12월입니다) 중요증서 11037

체크카드 BC카드 신용카드 POS카드 자동차세 변경카드

N Y N Y 0 0

통장이연번호 001

약관적용 안내

- ▶ 이 통장의 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탁거래의 기본약관, 예금 개별약관을 적용하며 우리 은행에 설치된 인감대장을 영인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 가계우대적금 등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에 대출을 받거나 잔액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잠정실정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수 만큼 특별금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될 경우 예금이 부정 인출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 통장 인강, 현금지급 (CD) 카드, 신용카드 등을 분실시는 바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 신고된 사항만으로 예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통장, 현금카드, IC카드 분실신고 : 1599-5000 / 1588-5000
신용(BC), 체크카드 분실신고 : 1588-9955

텔레뱅킹/고객상담 : ☎ 1599-5000, 1588-5000 [해외에서 이용시 82-2-2006-5000]
「고객의 소리」접수 : ☎ 080-365-5000(핸드폰이용시 ☎ 02-2008-5000)

주권미발행확인서

아래와 같은 귀하 소유 주식에 대하여 당사가 주권을 미발행 하였음을 확인하고, 주권 발행시 즉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스타트업
2.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3. 1주당 액면금액 : 금XXX원
4. 주식의 수량 : XXX주
5. 액면 총 금액 : XX,XXX원
6. 주주명:



20XX년 XX월 XX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번지 스타트업빌딩 1층

주식회사 스타트업

대표이사 XXX

(대표이사 날인)

(법인인감 날인)

인감대조 확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후 주권교부시 본 증서와 교환하여 주권을 교부할 예정이오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